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38
------------	------

발의연월일 : 2017. 1. 31.

발 의 자 : 우원식 · 최인호 · 이학영

박홍근 · 이종걸 · 문미옥

홍의락 · 남인순 · 황희

백혜련 · 박재호 · 김병관

김상희 · 박찬대 · 원혜영

김정우 · 설훈 · 윤후덕

김영호 · 권미혁 · 전해철

전혜숙 · 소병훈 · 인재근

김현권 · 박정 · 고용진

유은혜 · 신창현 · 송옥주

의원(3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안전성조사와 리콜권고 및 명령, 그리고 사업자의 자발적 리콜 등에 대한 규정 위주로 이루어져 있음. 그러나 실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안전성조사보다는 사업자의 사고 조사와 자발적 리콜이 먼저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임.

그러나 최근의 휴대전화 안전사고 사례와 같이 사업체가 사고조사에 즉시 착수하지 않아 대응이 지연되거나 사고조사의 과정이나 결과가 적시에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사망사고 등 중대한 제품안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즉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원인 규명 조사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의4 신설, 제13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1항).

제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중대사고에 대한 사고조사)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사망 사고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

3. 화재 또는 폭발 사고

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경우 즉시 사고조사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중대사고의 조사와 제2항에 따른 보고의 세부적인 내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를 “제9조의4제1항의 중대사고”로, “보고하여야”를 “즉시 보고하여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대사고에 대한 사고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중대사고에 대해 조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p><u>제9조의4(중대사고에 대한 사고 조사)</u> ① 사업자는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소비자의 사용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는 제외한다. 이하 “중대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p> <p>1. <u>사망 사고</u></p> <p>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전치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일으킨 사고</p> <p>3. <u>화재 또는 폭발 사고</u></p> <p>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p> <p>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에 착수한 경우 즉시 사고조사의 경위, 내용 및 결과 등을</p>

<p><u>4. 동일한 제품이 반복적인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u></p> <p>② (생략)</p> <p>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품안전정책의 수립·집행과 제품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제품안전정보망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p> <p>1. (생략)</p> <p><u><신설></u></p> <p>2. · 3. (생략)</p> <p>② · ③ (생략)</p>	<p><u><삭제></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6조(제품안전정보망의 구축 및 운영 등) ① ----- ----- ----- ----- ----- ----- -----.</p> <p>1. (현행과 같음)</p> <p><u>1의2. 제9조의4제1항에 따른 조사내용과 결과</u></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